

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전홍배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225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2. 27.

발의의원 : 전홍배 의원,
곽동환 의원, 최재규 의원

1. 제안이유

비슬산 전기차 이용료를 낮추고, 전기차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관광객의 부담을 줄이고 비슬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,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유 한 가지만 적용하는 단서 신설(안 제5조제1항)
- 나. 감면 대상 확대 및 관련 조문 정비 (안 제5조제1~3항)
- 다. 인용규칙명 변경에 따른 정비(안 제4조제4항, 제15조)
- 라. 이용료 변경(편도 요금 소인: 6,000→3,000, 대인:10,000→5,000)
(안 [별표1] 제1호)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면제”를 “면제하거나 일부를 감면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을 적용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가. 국민 또는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

나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
다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여자

라.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, 이용 현황, 공익상 필요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
다. 대구광역시 달성군민

라.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,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 중 “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[별표 1] 제1호 중 편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편도	소인	3,000
	대인	5,000

[별표 1]

이용료

1.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

(단위 : 원)

구 분		요 금
편도	소인	3,000
	대인	5,000
· 부가세 10% 포함		

2.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

(단위 : 원)

구 분		요 금
편도	소인	3,000
	대인	5,000
· 부가세 10% 포함		